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7] <개정 2014.11.19.>

## 군인 경력환산율표

구분	경력	호봉 획정 대상별 환산율		
		장교	준사관	부사관
가. 군인경력	1) 장교로서의 복무기간 2) 준사관으로서의 복무기간 3) 부사관으로서의 복무기간 4) 병으로서의 복무기간 5) 「군인보수법」 제9조제4호에 따른 해당 신분의 임용 전 군 교육기간. 다만, 환산된 경력연수는 해당 신분의 경력으로 본다.	100퍼센트 80퍼센트 80퍼센트 80퍼센트 5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5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50퍼센트
나. 군인 외 공무원경력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다만,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비상근으로 보지 아니한다)으로 근무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2) 고용직(대통령령 제12705호 고용직공무원 규정 시행일 전의 경노무고용직 외의 고용직과 같은 영 부칙 제2항에 따른 1종 및 2종 고용직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기간	80퍼센트 60퍼센트	90퍼센트 70퍼센트	100퍼센트 80퍼센트
다. 유사경력	국방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군인으로서 그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 기간	60퍼센트	70퍼센트	80퍼센트